유럽계 기업과 중국계 중개자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은행 안의 매판

환은행들은 설립 인가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였습니다. 은행 직원들은 유럽인이었고, 잠재 고객들의 방언을 구사하지 못했으며, 중국식 장부를 읽을 수 없었고, 중국계 상인의 평판을 판단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은행은 포르투갈어로 '구매자'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매판(comprador)이라는 현지 중개자를 고용하였고, 그를 통해 중국계 상인과 무역업자에게 대출하였습니다.[1] 매판은 고객을 소개하고 그들의 신용도를 보증하였으며, 중국인 직원을 채용·감독하고, 자신이 소개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은행에 보증을 서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매판 제도에는 모든 네트워크가 지닌 약점이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은행의 매판들은 주로 광동 방언 집단 출신이었고 같은 광동계와 거래하기를 선호하였습니다. 홍콩상하이은행 싱가포르 지점의 매판 자리를 광동계가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주계와 복건계 상인들은 이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2] 이렇게 제A편 제V장에서 서술한 방언 집단 간 분열이 유럽계 은행 내부에서도 재현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훗날 복건계와 조주계 공동체가 자체 은행을 설립한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에이전시 하우스의 중개인과 중간상인

에이전시 하우스들도 같은 방식으로 중국계 중개자에 의존하였습니다. 히사스에(Hisasue)는 중국계 상인들 사이에 존재하던 무역금융 수요가 주로 외국 무역상사를 위해 주석이나 향신료 같은 현지 산물을 수집하던 매판이나 중개인을 통해 충족되었다고 지적합니다. 이 중개인들은 외국계 은행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무역상사가 보증하는 단기 대출을 주선할 수 있었습니다.[3] 이처럼 유럽계 상사의 보증은 은행 신용이 중국계 산물 무역에 닿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개인의 경력은 이러한 구조를 잘 보여 줍니다. 1805년 말라카에서 태어난 탄 킴셍(Tan Kim Seng)은 1840년 Kim Seng & Co.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는 Boustead & Co.의 무역에서 중간상인 역할을 하였으며 에드워드 바우스테드(Edward Boustead)의 친구였습니다.[4] 1857년에는 시정위원회(Municipal Commission)의 최초 아시아인 위원이 되었고, 싱가포르 최초의 공공 상수도 건설에 1만 3,000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치아안시앙(Chia Ann Siang)은 1848년 Boustead & Co.에 입사하여 42년간 근무하였습니다.[5] 1832년 말라카에서 태어난 탄킴티안(Tan Kim Tian)은 1847년 싱가포르로 와서 훗날 Paterson, Simons & Co.로 알려진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파트너 윌리엄 패터슨(William Paterson)이 그가 영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습니다. 1865년 그는 아들 탄 벵완(Tan Beng Wan)과 함께 기선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6]

이들의 경력에는 공통된 패턴이 있었습니다. 흔히 해협 태생으로 영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중국계 청년이 유럽계 회사에 들어가 그 방식을 배우고, 자신의 고객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결국 독립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분야는 유럽계 회사에서 익힌 분야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유럽계 상사들은 중국계 공급자와 구매자에 접근할 수 있었고, 중국계 동업자들은 자본, 인맥, 상업 지식을 얻었습니다. 유럽인 파트너들이 회사와 유럽과의 연결을 장악하고 있었으므로 이 관계는 위계적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한 세대의 중국계 기업가들을 배출한 상업 학교이기도 하였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장부상 물물교환과 외국계 은행의 한계

19세기 동안 대부분의 중국계 상인들은 외국계 은행을 직접 이용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이들의 사업은 친족과 방언 집단 내부의 신뢰에 기반하였기 때문에, 경제사학자 W. G. 허프(W. G. Huff)가 '장부상 물물교환(bookkeeping barter)'이라고 부른 방식으로 서로 간의 계정을 정산하였습니다. 각 당사자는 거의 균형을 이루는 장부를 유지하였고, 실제 정산은 1년에 두 번만 필요하였습니다.[7] 이 방식은 현금과 은행 신용을 절약해 주었습니다. 또한 중국계 상업을 환은행의 서류 중심 세계 바깥에 대체로 머물게 하였습니다.

관점의 차이는 이러한 분리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금융자산을 기준으로 신용을 평가한 반면, 중국계 상인들은 능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포함한 개인적 평판의 문제로 신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중국인들에게 서구 은행 제도는 경직된 것으로 보였고, 은행들은 중국계 차주에 대한 장기 대출을 고위험으로 여겼습니다. 매판과 중개인은 바로 이 간극을 메우기 위해 존재하였습니다. 이들의 보증은 개인적 평판을 유럽계 은행이 받아들일 수 있는 담보의 형태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체티아르

공동체도 외국계 은행도 자금을 공급할 수 없을 때, 상인들은 식민지에서 가장 두드러진 전문 대금업자였던 남인도 출신 대금업자 체티아르(chettiar)에게 의지하였습니다. 체티아르는 요구불 어음으로 유럽계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더 높은 이율로 다시 빌려주었습니다. 차주는 실제로 받는 금액보다 큰 금액의 약속어음에 서명하였습니다. 미지급 이자는 더 높은 이율로 원금에 가산되었습니다.[8] 이렇게 체티아르는 은행이 직접으로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을 차주들에게까지 환은행의 영향력을 확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런던 단기금융시장에서 환은행을 거쳐 말레이반도의 시장과 마을의 소상인에게 이르는 신용 사슬 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중개자에서 경쟁자로

매판 제도와 에이전시 하우스의 중개 업무는 과도기적 장치였습니다. 해협 중국계 상인들이 영어 교육, 자본, 회사 형태에 관한 경험을 갖추게 되면서 이들은 자체 은행, 보험회사, 해운회사를 설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903년의 광익은행, 그 후 수십 년간의 복건계 은행들, 그리고 1932년 세 복건계 은행의 합병은 중개자들이 구축한 네트워크에서 자라났습니다.[9] 이 편의 제III장에서 이러한 발전을 살펴봅니다. 히사스에는 초기 중국계 은행들이 은행 매판과 비슷한 역할을 하면서 더 넓은 고객층을 상대하였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1930년대 말 싱가포르와 말라야에서 이들의 예금 점유율은 전체의 25% 미만에 머물렀습니다.[10] 이처럼 환은행들은 식민지 시대가 끝날 때까지 대외무역과 외환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였습니다.

주

1. Ong Eng Chuan, “Money Lending: A Short History”, *BiblioAsia*, 2007년 4월: 각 은행은 compradore(포르투갈어로 “buyer”)라는 현지 중개자를 고용함; “The banks lent money to Chinese merchants and traders through the comprador”; 매판은 중국계 계좌를 관리하고 현지 직원을 채용함; Wikipedia, “Comprador”(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이 용어는 “a Portuguese word that means buyer”. ↩

2.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5면: “these compradors mainly came from the Cantonese dialect group and preferred to deal with other Cantonese”; 광동계가 Hong Kong and Shanghai Banking Corporation 싱가포르 지점의 매판 자리를 장악하였으므로 다른 집단의 상인들은 “such as the Teochew or Hokkien, found it difficult to access the services the bank offered”. ↩

3.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4면: 무역금융 수요는 “was met mainly by the compradors or brokers that collected local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products, such as tin or spices, for foreign trading firms"; 이들은 "could arrange short-term loans with credit guaranteed by foreign trading firms". ↩

4. Wikipedia, "Edward Boustead"(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Tan Kim Seng은 Boustead의 무역에서 "acted as a middleman"하였고 그의 좋은 친구였음; Wikipedia, "Tan Kim Seng"(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05년 11월 18일 말라카 출생; 1840년 Kim Seng and Company 설립; 1864년 3월 14일 사망; 1857년 시정위원회 최초의 아시아인 위원으로 임명; 1857년 싱가포르 최초의 공공 상수도에 1만 3,000달러 기부. ↩

5. Wikipedia, "Boustead Singapore"(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Chia Ann Siang은 1848년 입사하여 42년간 근무; Tan Kim Seng은 이 회사 무역의 중간상인이었음. ↩

6. Wikipedia, "Tan Kim Tian"(최종 접속일 2026년 11월): 1832년 말라카 출생; 1847년 싱가포르 도착; Paterson Simons에 입사, William Paterson이 영어 학교에 다니도록 주선; 산물부(Produce Department)에서 근무; 1865년 아들 Tan Beng Wan과 함께 Tan Kim Tian and Son Steamship Company 공동 설립; 1882년 사망. ↩

7.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4면, W. G. Huff, "Bookkeeping Barter, Money, Credit, and Singapore's International Rice Trade, 1870–1939",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vol. 26, 1989, 161–189면 인용: 거래 상대방 간 정산은 장부상 물물교환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in which each book is balanced almost evenly and actual settlement is only required twice a year"; 14–15면: 외국계 은행들은 "viewed credit solely in terms of financial assets, whereas the Chinese viewed credit as based on personal reputation"; 중국인들은 "considered the Western banking system inflexible". ↩

8. Ong Eng Chuan, "Money Lending: A Short History", *BiblioAsia*, 2007년 4월: "the chettiars were the most prominent professional moneylenders"; 이들은 요구불 어음으로 유럽계 은행에서 차입하여 더 높은 이율로 대출함; 수령 금액은 약속어음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었음; 미상환 대출은 원금에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산입됨;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5면: 중국인들은 흔히 체티아르에게서 고리로 차입함. ↩

9.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5–21면: Kwong Yik Bank는 “established in 1903 by Wong Ah-Fook”와 광동계 동료들이 설립; 대공황의 위기는 “led to the merger of Singapore’s three Hokkien banks in 1932”. ↩

10. Ryoichi Hisasue, “Chinese Banking Business in Singapore”, 16–21면: 초기 중국계 은행들은 “played a similar role to the bank comprador but served a wider” 고객층을 상대함; 주 30: “In the late 1930s, the deposit share in Chinese banks in Singapore and Malaya was less than 25% of the total”.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